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의 공개 및
지침마련 등〉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1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의 공개 및 지침마련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 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응시한 대학별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의 공개 및 지침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한 경우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9(대학별고사의 공개)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경우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¹⁾, 이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대학별고사는 각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으로³⁾,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신체검사 제외)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면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이하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⁴⁾.

이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매 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⁵⁾. 해당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는 출제과정, 채점기준, 기출문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대학별고사인 논술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 자신이 응시한 논술고사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받을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권리가 침해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한 경우 기출문제, 채점기준 등을 해당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대학별고사 중 논술 등 필답고사의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기준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상 대학별고사의 경우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통하여 기출문제, 채점기준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는 점, 개정안과 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부담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별고사의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학별고사의 운영 주체는 대학의 장이며 대학별로 전형 운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침 수립 의무는

대학의 장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교협, 대학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이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상세한 채점기준, 출제 과정 등의 분석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당해 전형 종료 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관련 기준 공개는 대학의 전형운영 부담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 : 신중검토

- (경기)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가 아닌 최초합격자 발표 후로 수정 필요
- (대구)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과 평가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고교 교육과정 범위 준수여부, 문항 해설 등의 세부 내용은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확인으로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절차가 기정비되어 있으며, 만약 공개 절차를 추가로 신설해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공개하는 경우 대학의 입학전형 일정 진행에 매우 무리가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대학 : 신중검토

- (가천대)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공지하는 것은 시간상 어려우며, 이미 기출문제와 출제의도를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입 준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성신여대) 이미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고사 출제 전,

출제과정, 출제 후 분석을 공개하고 있어 개정안 불필요

- (아주대) 최종합격자 발표 전 공개 시 입학전형 일정 지연 및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며, 대학별고사의 최종합격자 발표 전 공개 시 공개 내용에 대한 검토 시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반대함
- (한양대ERICA) 이미 대학은 수험생에게 평가유형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일률적 공개 의무화는 불필요하며, 합격자 발표 이전에 공개할 경우 이의제기·법적 분쟁 증가 등으로 대학의 행정적 운영 부담이 크고, 교육부의 감독권 강화로 대학 고유의 평가권 및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자료 1]

- 대학교 입학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시모집 기간에는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운영되며, 정시모집 기간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대체로 운영됨.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전형 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 위주	· (학생부종합) 교과 · 비교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논술 위주	· 논술(대학별고사) 등
실기/실적 위주	· 실기 등
수능 위주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자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교협)

[참고자료 2]

<모집시기·전형유형별 모집 비율('23~'26학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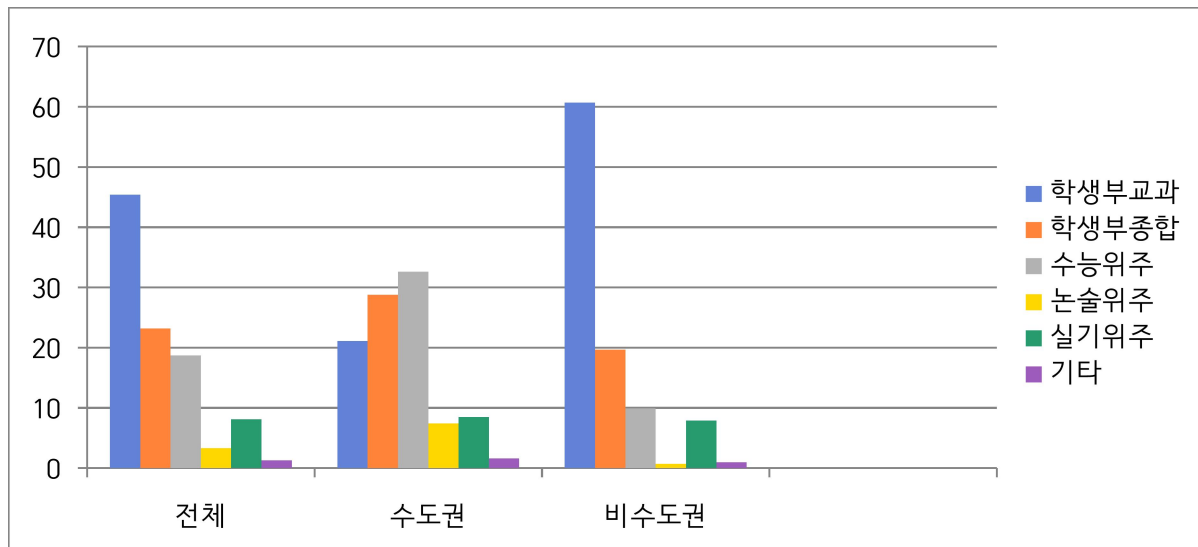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형유형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464	44.2%	154,121	44.8%	154,475	45.3%	155,495	45.0%
	학생부위주(종합)	81,390	23.3%	79,358	23.0%	78,924	23.1%	81,373	23.6%
	논술위주	11,016	3.2%	11,214	3.3%	11,266	3.3%	12,559	3.6%
	실기/실적위주	21,014	6.0%	22,539	6.5%	22,531	6.6%	21,865	6.3%
	기타	4,558	1.3%	4,800	1.4%	4,285	1.3%	4,556	1.3%
수시 소계		272,442	78.0%	272,032	79.0%	271,481	79.6%	275,848	79.9%
정시	수능위주	69,911	20.0%	66,300	19.3%	63,827	18.7%	63,902	18.5%
	실기/실적위주	6,150	1.8%	5,515	1.6%	5,224	1.5%	4,726	1.4%
	학생부위주(교과)	252	0.1%	228	0.1%	174	0.1%	317	0.1%
	학생부위주(종합)	313	0.1%	162	0.0%	183	0.1%	219	0.1%
	기타	56	0.0%	59	0.0%	45	0.0%	167	0.0%
정시 소계		76,682	22.0%	72,264	21.0%	69,453	20.4%	69,331	20.1%
합계		349,124	100%	344,296	100%	340,934	100%	345,179	100.0%

(자료: 교육부)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보도자료(2024학년도~2026학년도)

< 지역별 대입전형 운영현황(2025학년도 기준) >

구분		학생부위주			수능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기타	합계
		교과	종합	소계					
전체 (a+b)	인원	154,649	79,107	233,756	63,827	11,266	27,755	4,330	340,934
	비율	45.4	23.2	68.6	18.7	3.3	8.1	1.3	100
수도권(a)	인원	27,828	37,996	65,824	43,117	9,778	11,228	2,179	132,126
	비율	21.1	28.8	49.8	32.6	7.4	8.5	1.6	100
지방(b)	인원	126,821	41,111	167,932	20,710	1,488	16,527	2,151	208,808
	비율	60.7	19.7	80.4	9.9	0.7	7.9	1.0	100



(자료: 교육부)